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27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민홍철·문대림·이기헌

이소영 · 김준혁 · 손명수

정준호 • 이재강 • 김기표

김정호 · 한정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나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 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상시적인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청력감퇴, 정신질환 등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의 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공항주변지역의 경우에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교통밀집지역"을 "교통밀집지역, 공항주변지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
강영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	강영향조사 등) ①
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	2 <u>교통밀</u>
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	집지역, 공항주변지역
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	
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